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8037(본소), 2021가합8894(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규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철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722,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 소 청구 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95,969,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 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93,96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인천시 서구 C 공장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시 서구 C
3. 착공 연월일 : 2017. 11. 13.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8. 3. 15.
5. 계약금액 : 1,456,400,000원(공급가액 : 1,324,000,000원 + 부가가치세 132,400,000원)
8. 기성부분금: 공정율 ① 골조완료시(40%), ② 판넬마감시(20%), ③ 내부마감시(10%), ④ 준공금(20%)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의 0.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9조(공사기간)

-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 제24조(준공검사)

-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

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③ 피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8. 3. 10.경 준공예정일을 2018. 3. 15.에서 2018. 5.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마치고, 완공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8. 3.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7.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64,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56,645,950원<sup>1)</sup> 상당의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56,400,000원 중 1,164,48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91,92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56,645,9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서 348,565,950원(= 291,920,000원 + 56,645,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52,596,736원(부가가치세 제외)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8,565,950원에서 52,596,7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95,969,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추가 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행된 공사 항목 중 추가 공사로 인정되는 부분은 별지 1 표 기재 항목 중 10, 11, 24번을 제외한 부분과 같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은 55,645,9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7,565,950원(= 291,920,000원 + 55,645,950원)의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돈에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인 52,596,736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4,969,214원(= 347,565,950원 - 52,596,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57,856,4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공장에 별지 2 표 기재 항목 중 2-2 내지 2-10, 2-12 및 2-14번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각 해당 내역에 대한 공사비용은 별지 2 표 중 ‘공사비①’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2 표 중 ‘공사비①’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 52,596,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2,596,736원에 더하여 그 합계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도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피고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하자보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인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앞서 본 하자보수비용 외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지체상금 채권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이 2018. 5. 31.이고, 원고가 2018. 8.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제9조 제3항)”,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1일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 93,209,600원{= 계약금액 1,456,400,000원 × 64일(2018. 6. 1.부터 2018. 8. 3.까지) × 지체상금율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건축주인 피고의 변경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고, 변경된 설계도면이 준공예정일 직전인 2018. 5. 중순 이후에 제공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에 따라 필요한 추가 철골 구조물의 제작 발주 및 설치가 완료된 2018. 6. 20.경 이후에야 원고가 추가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공사 지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 및 불가항력이나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혹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피고는 2018. 3.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기간을 2018. 5. 31.자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설계변경 외에 원, 피고가 달리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2018. 5. 31.자로 공사기간 연장 시 설계변경 항목으로 인한 추가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변경된 설계도면을 준공예정일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2018. 5. 중순경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경된 설계도면의 제공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사용승인이 완료된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설계변경 항목들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서 인정한 추가공사 항목은 상당 부분 중복된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지체상금 93,209,600원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70%인 65,246,72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 3) 상계 결과

#### 가) 자동채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으로서 52,596,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위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 65,246,720원만을 고려한다.

#### 나) 수동채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4,969,214원의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지체상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모두 이 사건 건물 인도일인 2018. 8. 3. 무렵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5. 31.자 준비서면이 그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8. 3.에 소급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 합계 65,246,72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229,722,494원(= 294,969,214원 - 65,246,72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722,49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반소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장에는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57,856,4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91,753,200원 합계 149,609,6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55,645,9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 55,645,950원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93,963,66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2. 다. 1), 2)항 기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소청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장하는 2. 다. 1), 2)항 기재 채권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존재가 인정되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65,246,720원이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채권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이승민, 판사 손고은

## 별지 1 추가공사 항목 및 비용

단위 : 원

| 구분                                                    | 공사비①        | 부가가치세②     | 합계(①+②)     | 비고 |
|-------------------------------------------------------|-------------|------------|-------------|----|
| 1. 기계실 관입지름->콘크리트 지붕 변경에 의한 레미콘타설                     | -996,384    | -99,638    | -1,096,023  |    |
| 2. 기계실 관입지름->콘크리트 지붕 변경에 의한 철근가공조립                    | 135,146     | 13,515     | 148,661     |    |
| 3. 2층 바닥 층속에 따른 바닥 레미콘 타설                             | 3,709,693   | 370,969    | 4,080,662   |    |
| 4. 2층 바닥 층속에 따른 바닥 철근가공조립                             | 1,036,121   | 103,612    | 1,139,733   |    |
| 5. 기계실 철골재단 설치                                        | 1,244,743   | 124,474    | 1,369,217   |    |
| 6. 건물 내 1-3층 비상계단실 선설 계단난간대 설치                        | 1,697,377   | 169,738    | 1,867,114   |    |
| 7. 기계실 계단제인트 도장                                       | 580,334     | 58,033     | 638,367     |    |
| 8. 2층 바닥 층속 바닥 예폭시도장                                  | 4,691,169   | 469,117    | 5,160,285   |    |
| 9. 1.2층 내 관널 벽체->시멘트벽돌+미장공사+페인트시공으로 변경에 따른 수설제인트마르기   | -12,738,132 | -1,272,815 | -14,000,948 |    |
| 10. 건물 내 1-3층 비상계단실 선설에 의한 철골재단 설치                    |             |            |             |    |
| 11. 3층 층속 공사로 인한 H빔 가공, 설치                            |             |            |             |    |
| 12. 건물 내 1-3층 비상계단실 선설에 따른 관널 사공                      | 14,580,081  | 1,458,008  | 16,038,089  |    |
| 13. 1층 로비 구분 변경에 따른 내화관널 시공                           | 4,644,916   | 464,492    | 5,109,407   |    |
| 14. 건물 내 1-3층 비상계단 위 데코 타일 시공                         | 434,304     | 43,430     | 477,734     |    |
| 15. 화장실 원장 경량천+SMC                                    | 220,531     | 22,053     | 242,584     |    |
| 16. 화장실 칸막이 라미를 설치                                    | 88,716      | 8,872      | 97,588      |    |
| 17. 경량천원장천+식고믹스 추가                                    | 1,296,087   | 129,609    | 1,425,695   |    |
| 18. 1.2층 내 관널 벽체->시멘트벽돌+미장공사+페인트시공으로 변경에 따른 시멘트벽돌 쌓기  | 7,651,651   | 765,165    | 8,416,816   |    |
| 19. 1.2층 내 관널 벽체->시멘트벽돌+미장공사+페인트시공으로 변경에 따른 시멘트블록 마르기 | 10,594,880  | 1,059,488  | 11,654,368  |    |
| 20. 건물 내 1-3층 비상계단 위 문틀시공                             | 134,653     | 13,465     | 148,119     |    |
| 21. 선설 비상계단 출입문 설치                                    | 2,870,102   | 287,010    | 3,157,112   |    |
| 22. 2층 화장실 타일 시공                                      | 1,446,542   | 144,654    | 1,591,196   |    |
| 23. 1.2층 선설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                               | -817,653    | -81,765    | -899,430    |    |
| 24. 1.2층 선설 화장실 오,폐수관 설치                              |             |            |             |    |
| 25. 1.2층 선설구간 소방설비 시공                                 | 1,022,111   | 102,211    | 1,124,322   |    |
| 26. 1.2층 선설구간 전기설비 시공                                 | 7,050,264   | 705,026    | 7,755,291   |    |
| [ 합 계 ]                                               | 50,587,228  | 5,058,723  | 55,645,950  |    |

## 별지 2 하자보수 항목 및 보수비용

[단위 : 원]

| 구 분                            | 공 사 비①     | 부가가치세②    | 합 계(①+②)   | 비 고 |
|--------------------------------|------------|-----------|------------|-----|
| 1-1. 전기 누수 및 작동 부실 여부          |            | 산출제외      |            |     |
| 1-2. 마감재요에 따른 시공여부             |            | 산출제외      |            |     |
| 1-3. 1층 평면도에 따른 시공여부           |            | 산출제외      |            |     |
| 1-4. 2층 평면도에 따른 시공여부           |            | 산출제외      |            |     |
| 1-5. 3층 평면도에 따른 시공여부           |            | 산출제외      |            |     |
| 1-6. 옥탑 평면도에 따른 시공여부           |            | 산출제외      |            |     |
| 1-7. 정면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여부        |            | 산출제외      |            |     |
| 1-8. 파측면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9. 후측면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10. 배면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11. 주 단면도-1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12. 주 단면도-2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13. 각 계단단면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1-14. 각 원호도에 따른 시공 및 재질 사용여부   |            | 산출제외      |            |     |
| 【 소 계 】                        | 0          | 0         | 0          |     |
| 2-1. 국내소화전 송수구 연결 부위 시공 불량     |            | 산출제외      |            |     |
| 2-2. 화장실 시공 불량                 | 241,183    | 24,118    | 265,301    |     |
| 2-3. 도어 시공 불량                  | 1,054,218  | 105,422   | 1,159,640  |     |
| 2-4. 벽체 시공 불량(크랙발생)            | 97,144     | 9,714     | 106,858    |     |
| 2-5. 외벽 관통 시공 불량(건물 전체누수)      | 15,092,493 | 1,509,249 | 16,601,742 |     |
| 2-6. 옥상 방수 무설시공에 따른 누수         | 889,436    | 88,943    | 978,379    |     |
| 2-7. 1층 바닥 부근콘크리트 타설 무결 시공     | 30,607,561 | 3,060,756 | 33,668,317 |     |
| 2-8. 2층 바닥 예폭시 무설시공            | 67,920     | 6,792     | 74,712     |     |
| 2-9. 옥탑 승강기 진입로 무설시공에 따른 누수    | 2,366,099  | 236,610   | 2,602,709  |     |
| 2-10. 옥탑 도어 시공불량               | 301,836    | 30,183    | 332,019    |     |
| 2-11. 3층 단열벽체 무설시공             |            | 산출제외      |            |     |
| 2-12. 소방설비 하자                  | 900,853    | 90,085    | 1,000,938  |     |
| 2-13. 건물 누수                    |            | 산출제외      |            |     |
| 2-14. 벽체 흔들림                   | 859,004    | 85,900    | 944,904    |     |
| 【 소 계 】                        | 52,596,736 | 5,259,674 | 57,856,410 |     |
| 【 합 계 】                        | 52,596,736 | 5,259,674 | 57,856,410 |     |

1) 55,645,950원의 오기로 보이거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기재한다.